|  |  |  |
| --- | --- | --- |
| **1.2.6 외국투자 주식회사 설립 약간 문제 관련 잠정규정**  (외경무부 령 1995년 제1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국제경제기술합작과 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며 사회주의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하 외국측 주주라 약칭)은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측 주주라 약칭)과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약칭)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부 자본을 균등액의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구입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며, 회사는 전부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중외측주주가 공동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외국측 주주가 구입 및 소유한 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법인이다.  제3조 회사는 외국투자기업 형태의 일종으로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회사 설립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는 기술이 선진적인 생산성 회사의 설립을 권장한다.  제5조 회사는 발기방식 또는 공모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발기방식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회사법에 규정한 발기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적어도 1명의 발기인이 외국측 주주여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전 항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적어도 1명 발기인이 주식 모집전 3년간 연속 이윤을 본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당해 발기인이 중국측 주주일 경우 최근 3년 중국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발기인이 외국측 주주일 경우 당해 외국측 주주의 거주 소재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등록 3년 후에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발기인은 회사 설립에 합의를 본 후 공동으로 1명 발기인에게 위탁하여 회사 설립 신청수속을 진행하게 한다. 구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정부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함)에 회사 설립신청서, 타당성연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식모집설명서를 별첨해야 한다.  (2) 상기 서류는 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주관부서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무부서에 넘긴다. 상기 서류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발기인은 회사 설립 합의서, 정관을 정식으로 체결한다.  (3) 발기인이 체결한 회사 설립합의서, 정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무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발기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발기인 각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종 외국문자를 첨가할 수 있다. 단 심사비준의 효력은 중문본에 기준한다.  제10조 회사설립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발기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2) 설립하려는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종지  (3) 회사 설립방식, 자본금총액, 유형, 주식 액면가액, 발기인 구입비율, 주식 모집범위와 루트  (4) 발기인의 생산경영상황, 최근 3년간의 생산경영, 자산과 부채, 이윤 등 상황(공모방식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발기인에 한함) 포함  (5) 회사 자금의 투입방향 및 경영범위  (6) 신청 제출일자, 발기인 법인대표의 사인 및 발기인회사 인장 날인  (7)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발기인 합의서에는 하기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 발기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국적, 주소, 직무  (2) 설립하려는 회사의 명칭, 주소  (3) 회사 종지, 경영범위  (4) 회사 설립방식, 조직형태  (5) 회사 등록자본, 자본금총액, 유형, 발기인 매입주식수, 형식 및 기한  (6)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  (7) 위약책임  (8) 법률 적용 및 쟁의의 해결  (9) 합의서의 효력 발생 및 종지  (10) 합의서 체결일자, 지점, 발기인의 사인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사 설립합의서와 정관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후 발기인은 30일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에 의거 은행에 전용구좌를 개설한다. 발기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금 불입 완료전에 연대 납입책임을 진다. 회사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 발기인은 설립행위로 인한 비용과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13조 발기방식으로 회사 설립시 발기인은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거한 후 이사회가 회사등록기관에 회사설립 비준서류, 회사정관 등 서류의 제출하여 설립등록을 신청한다.  공모방식으로 회사 설립시 주식발행금 공모 완료후 법정자금사정기구의 자금사정을 거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30일 내에 회사 창립대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감사회를 선거하며 이사회는 창립대회 결속후 30일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회사 설립 비준서류, 회사 정관, 자금사정증명, 창립대회 회의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여 기업설립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수속을 마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약칭)이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최근 연속 3년간 이윤을 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를 회사 발기인(또는 기타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 설립합의서, 정관을 체결하고 외국투자기업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초보적 심사동의를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신청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외국투자기업 계약서, 정관  (2) 기업 재구성에 관한 원 외국투자기업 이사회결의  (3) 원 계약서, 정관을 수정에 관한 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 결의  (4) 원 외국투자기업 자산평가보고  (5) 발기인(원 외국투자기업 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포함) 합의서  (6) 회사 정관  (7) 원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비준증서, 최근 연속 3년간 재무보고서  (8) 회사설립신청서  (9) 발기인의 자금신용증명  (10) 타당성연구보고서.  제15조 상기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으면 발기인은 비준증서 수령후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기업이 회사로 변경 등록한 후 원 외국투자기업의 일체 권리와 의무는 전부 회사에서 부담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중외투자자는 원 외국투자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수락한 의무를 발기인 합의서 및 정관에 기입하고 설립한 회사에 적용한다.  제17조 국유기업, 집단소유제기업이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기타 조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하기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당해 기업이 적어도 5년간 경영했고 또한 최근 연속 3년간 이윤을 보아야 한다.  (2) 외국측 주주가 자유태환 외환으로 구입 및 소유한 주식금이 당해 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업 경영범위가 외국투자기업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측 주주를 발기인으로 하여 체결한 회사 설립 합의서, 정관은 기업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에서 초보심사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 신청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 기업 자산평가보고서  (2) 회사설립신청서  (3) 타당성연구보고서  (4) 발기인 합의서  (5) 회사 정관  (6) 원 기업의 영업허가증, 최근 연속3년간의 대차대조표  (7) 발기인의 자금신용증명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18조 상기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후 발기인은 비준증서 수령 후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식유한회사가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기타 조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 하기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가의 정식 비준을 받고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2) 외국측 주주가 자유태환 외환으로 구입 및 소유한 주식금이 당해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식유한회사의 경영범위가 외국투자기업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주식유한회사가 인민폐 특종주식(B주식)의 공개발행을 통하여 회사로 변경하려 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변경 관련 주주대회 결의  (2) 원 주식유한회사 자산평가보고서  (3) 회사 변경보고서  (4) 원 주식유한회사 정관에 대한 보완, 수정합의서  (5) 인민폐 특종주식(B주식)의 공개발행 비준 증권관리부서의 증명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21조 주식유한회사가 주식 확대방식으로의 증자 또는 외국측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 조 제(1)(2)(3)(4)호에 규정된 서류 외, 주식유한회사와 주식구입자 간에 체결한 주식구입합의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주식유한회사가 경외에 경외상장 외자주(H주식과 N주식을 포함, 단 이에 한하지 않음)를 발행하고 또한 경외에서 상장하여 회사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 제(1)(2)(3)(4)호에 규정된 서류에 하기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외상장 관련 증권관리부서의 비준서류  (2) 원 주식유한회사 주식상장 관련 경외증권관리기구의 비준서류  (3) 경외에서 상장한 원 주식유한회사 주식의 거래상황.  제23조 상기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후 원 주식유한회사는 비준증서와 자금모집증명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본 잠정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회사법》, 《주식유한회사 경외 주식 공모 및 상장 관련 국무원의 특별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이 회사로 재구성된 경우 감면세 등 우대기한은 새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대륙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잠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본 잠정규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번역자 주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경무부)는 현 상무부로 변경되었음. |  | **关于设立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若干**  **问题的暂行规定**  （外经贸部令1995年第1号，根据2015年10月28日《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和规范性文件的决定》修正）  　　第一条 为进一步扩大国际经济技术合作和交流，引进外资，促进社会主义商品经济的发展，外国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个人（以下简称外国股东），按照平等互利的原则，可与中国的公司、企业或其他经济组织（以下简称中国股东）在中国境内，共同举办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公司）。  　　第二条 本规定所称的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是指依本规定设立的，全部资本由等额股份构成，股东以其所认购的股份对公司承担责任，公司以全部财产对公司债务承担责任，中外股东共同持有公司股份。外国股东购买并持有的股份占公司注册资本25％以上的企业法人。  　　第三条 公司为外商投资企业的一种形式，适用国家法律、法规对于外商投资企业的有关规定。  　　第四条 设立公司应符合国家有关外商投资企业产业政策的规定。国家鼓励设立技术先进的生产型公司。  　　第五条 公司可采取发起方式或者募集方式设立。  　　第六条 以发起方式设立的公司，除应符合公司法规定的发起人的条件外，其中至少有一个发起人应为外国股东。  　　以募集方式设立的公司，除应符合前款条件外，其中至少有一个发起人还应有募集股份前3年连续盈利的记录，该发起人为中国股东时，应提供其近3年经过中国注册会计师审计的财务会计报告；该发起人为外国股东时，应提供该外国股东居所所在地注册会计师审计的财务报告。  　　第七条 发起人股份的转让， 须在公司设立登记3年后进行，并经公司原审批机关批准。  　　第八条 发起人达成设立公司协议后，可共同委托一发起人办理设立公司的申请手续。具体程序是：  　　（一）申请人向其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政府主管部门（以下称主管部门）提交设立公司的申请书、可行性研究报告、资产评估报告等文件。  　　以募集方式设立公司的，申请人还须提交招股说明书。  　　（二）上述文件经主管部门审查同意后，由主管部门转报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对外经贸部门。上述文件经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对外经贸部门核准后，发起人正式签定设立公司的协议、章程。  　　（三）发起人签定设立公司的协议、章程，报省、自治区、直辖市对外经贸部门审查同意后，报对外贸易经济合作部审查批准。对外贸易经济合作部在45日内决定批准或不批准。  　　第九条 发起人提交的各项文件必须用中文书写。在发起人各方认为需要时，可商定再用一种外文书写，但以审批生效的中文文本为准。  　　第十条 设立公司的申请书应概要说明：  　　（一）发起人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  　　（二）组建公司的名称、住所及宗旨；  　　（三）公司设立方式、股本总额、类别、每股面值、发起人认购比例、股份募集范围和途径；  　　（四）发起人的生产经营情况，包括近3年生产经营、资产与负债、利润等情况（限于以募集方式设立公司的发起人）；  　　（五）公司的资金投向及经营范围；  　　（六）提出申请的时间，发起人的法定代表签名并加盖发起人单位公章；  　　（七）其他需要说明的事项。  　　第十一条 发起人协议应包括以下主要内容：  　　（一）发起人的名称、住所、法定代表人的姓名、国籍、住所、职务；  　　（二）组建公司的名称、住所；  　　（三）公司的宗旨、经营范围；  　　（四）公司设立的方式、组织形式；  　　（五）公司注册资本、股份总额、类别、发起人认购股份的数额、形式及期限；  　　（六）发起人的权利和义务；  　　（七）违约责任；  　　（八）适用法律及争议的解决；  　　（九）协议的生效与终止；  　　（十）订立协议的时间、地点，发起人签字；  　　（十一）其他需要载明的事项。  　　第十二条 发起人设立公司的协议、章程经对外贸易经济合作部批准后，发起人应在30日内凭对外贸易经济合作部颁发的批准证书到银行开立专用帐户。发起人在公司发行的股份缴足之前应承担连带认缴责任。公司不能设立时，发起人为设立行为所发生的费用和债务负连带责任。  　　第十三条 以发起方式设立公司的，发起人选举董事会和监事会后，由董事会向公司登记机关报送设立公司的批准文件、公司章程等文件，申请设立登记。  　　以募集方式设立公司的，发行股份的股数缴足后，必须经法定的验资机构验资并出具证明。发起人应当在30日内主持召开公司创立大会，并选举董事会、监事会，董事会应于创立大会结束后30日内，向公司登记机关报送设立公司的批准文件、公司章程、验资证明、创立大会的会议记录等文件，申请设立登记。  　　公司登记机关自接到全部登记文件之日起30天内完成登记注册手续，并颁发营业执照。  　　第十四条 已设立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外资企业（以下简称外商投资企业），如申请转变为公司的，应有最近连续3年的盈利记录。由原外商投资企业的投资者作为公司的发起人（或与其他发起人）签定设立公司的协议、章程，报原外商投资企业所在地的审批机关初审同意后转报对外贸易经济合作部审批。  　　申请转变应报送下列文件：  　　（一）原外商投资企业的合同、章程；  　　（二）原外商投资企业董事会关于企业改组的决议；  　　（三）原外商投资企业投资者关于终止原合同、章程的决议；  　　（四）原外商投资企业资产评估报告；  　　（五）发起人（包括但不限于原外商投资企业投资者）协议；  　　（六）公司章程；  　　（七）原外商投资企业的营业执照、批准证书，最近连续3年的财务报告；  　　（八）设立公司的申请书；  　　（九）发起人的资信证明；  　　（十）可行性研究报告。  　　第十五条 上述申请经对外贸易经济合作部批准后，发起人应自批准证书签发后向公司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手续。  　　第十六条 外商投资企业变更登记为公司后，原外商投资企业的一切权利、义务全部转由公司承担。  　　外商投资企业的中外投资者在原外商投资企业合同、章程中承诺的义务，应列入发起人协议及章程，同样适用所设立的公司。  　　第十七条 国有企业、集体所有制企业如申请转变为公司的，除符合本规定其他条款的规定外，还须符合以下条件：  　　（一）该企业至少营业5年并有最近连续3年的盈利记录；  　　（二）外国股东以可自由兑换的外币购买并持有该企业的股份占该企业注册资本的25％以上；  　　（三）企业的经营范围符合外商投资企业产业政策。  　　中外股东作为发起人签定设立公司的协议、章程，报企业所在地审批机关初审同意后转报对外贸易经济合作部审批。  　　申请转变应报送下列文件：  　　（一）原企业资产评估报告；  　　（二）设立公司的申请书；  　　（三）可行性研究报告；  　　（四）发起人协议；  　　（五）公司章程；  　　（六）原企业的营业执照、最近连续3年的资产负债表；  　　（七）发起人的资信证明；  　　（八）其他必要的文件。  　　第十八条 上述申请经对外贸易经济合作部批准后，发起人应自批准证书签发后向公司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手续。  　　第十九条 股份有限公司申请转变为公司的，除符合本规定其他条款的规定外，还须符合以下条件：  　　（一）该股份有限公司是经国家正式批准设立的；  　　（二）外国股东以可自由兑换的外币购买并持有该股份有限公司的股份占公司注册资本的25％以上；  　　（三）股份有限公司的经营范围符合外商投资企业产业政策。  　　第二十条 股份有限公司通过向社会公开发行人民币特种股票（Ｂ股），申请转变为公司的，应报送如下文件：  　　（一）股东大会对转变为公司的决议；  　　（二）原股份有限公司资产评估报告；  　　（三）申请转变为公司的报告；  　　（四）原股份有限公司章程的补充、修改协议；  　　（五）证券管理部门批准公开发行人民币特种股票（Ｂ股）的文件；  　　（六）其它必要的文件。  　　第二十一条 股份有限公司通过增资扩股或转股发行外国股东持有的股份，申请转变为公司的，除报送前条第（一）、（二）、（三）、（四）款规定的文件外，还应报送股份有限公司与定向购股人的购股协议等其他必要的文件。  　　第二十二条 股份有限公司在境外发行境外上市外资股（包括但不限于Ｈ股和Ｎ股）并在境外上市申请转变为公司的，除报送第二十条第（一）、（二）、（三）、（四）款规定的文件外还应报送如下文件：  　　（一）证券管理部门批准境外上市的文件；  　　（二）境外证券机构批准原股份有限公司股票上市的文件；  　　（三）境外上市的原股份有限公司股票交易情况。  第二十三条 上述申请经对外贸易经济合作部批准后，原股份有限公司应持批准证书和公司的募股证明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手续。  　　第二十四条 本暂行规定未规定的公司的其它事宜，按《公司法》、“国务院关于股份有限公司境外募集股份及上市的特别规定”及有关规定办理。  　　第二十五条 凡属外商投资企业改组成公司的，其减免税等优惠期限，不再重新计算。  　　第二十六条 香港、澳门、台湾地区的公司、企业、其它经济组织或个人，在大陆投资设立公司的，准用此暂行规定。  　　第二十七条 本暂行规定由对外贸易经济合作部负责解释。 |